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1010024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06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514)

우 박 집

정 보 공 개 서

(주)계경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2024 . . .

(주)계 경 원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50

Tel : 031-765-2230

Fax : 031-768-4726

우박집 사업본부 : 1644-679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기타 - 첨부서류)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희망지역 인근가맹점 리스트
- 가맹금 예치 신청서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계경원	우박집 외 1 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50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0.11.18	2000.11.20	최상민	031-768-4722	031-768-4726
	법인등록번호	134211-0040967		사업자등록번호	126-81-49167

- 우박집은 2011년 7월 20일 시작된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임.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본인	최상민 (주)계경원	우박집 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5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상민	031-768-4721	031-768-4726
감사	이상용 (주)계경원	우박집 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5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상민	031-768-4721	031-768-4726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우박집]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우 박 집	소고기전문점
상 호	우박집 OO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330220000
로 고		
그 밖의 영업표지		간판표시

4.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별첨

(단위 : 천원)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1,949,249	809,143	1,140,105	6,137,714	103,068	78,280
2022	2,269,498	1,021,737	1,247,760	6,234,104	141,771	107,655
2023	2,143,880	801,250	1,342,630	5,855,415	142,641	94,869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최상민	대표	2004.04.22 ~ 현재	(주)계경원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상용	감사	2021.11.18 ~ 현재	(주)계경원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우박집]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계경원 푸ल्ली	기타외식 가맹사업 경영	2015년 5월~ 현재	푸ल्ली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0453)이라는 기타외식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우박집	우박집	2011.03.21. 출원 2012.05.31. 등록	4120110007464 4102330220000	(주)계경원	2032. 5.31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으로 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위 표의 상표사용은 가맹점 매장영업을 위한 내, 외부의 표시 물 (간판, 현수막, 전단, 인쇄물) 등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 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가맹 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해당사업 없음.

II. 가맹본부 [우박집]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3월 5일

(우박집 최초 가맹점 계약일 : 2011년 7월 20일)

2. 우박집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계경원	우박집	최상민	2011.03~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50

3. 우박집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우박집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업	소고기 구이 전문점

4. 최근 3년간 사업년도 말 [우박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1	11	-	10	10	-	8	8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8	8	-	7	7	-	4	4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우박집] 가맹점 수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년	8	3	-	-	-	11	+3
2022년	11	-	-	1	-	10	-1
2023년	10	1	-	3	2	8	-2

6. [우박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우박집]외에도 [1]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계경원	푸릴리	20150453	기타외식	15/0	11/0	8/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우박집]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vat 제외/기준:2022 년 12 월 31 일)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 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 매출액(상한)		연간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 체	8	210,898	4,304	546,347	6,586	103,287	1,846	7 개기준
서울		해당없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2	해당없음						5 곳 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1	해당없음						5 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 곳 미만
전북	4	해당없음						5 곳 미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지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2023 년 7 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 개 가맹점 매출액은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8 개가 아닌 실제 7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시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계경원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우박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우박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	1,95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는 2023년 우박집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판촉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우정사업본부 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지식경제 우정사업본부	예금 사업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3-7 경기광주우체국	031-762-0100
신한은행	멀티 채널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20-16 신한은행 경기광주지점	031-761-8771

별첨서류) 가맹금 예치 신청서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계경원	-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 일 정도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우박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금칠천오만원(₩70,050,000)** VAT 포함 (가맹비, 교육비 포함 / 인테리어, 주방집기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VAT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9,7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 시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	OPEN 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 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	2,200	계약체결 시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 시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	폐점시 물품대금 미수가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그 외, 미수보다 적을 경우 차감 후 지급)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 정산 후 지급.

2)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9,700,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9,700
가입비	5,5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VAT포함 / 99㎡(3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60,350	2,011		
필수설비(정착물)	별도 지정하지 않음.				
인테리어 (점포 내외장공사)	가맹본부 또는 점주 실행	39,600	1,320	– 계약금(50%) : 계약서 작성시	공사 전 계약 취소 시 반환
간판	가맹본부 또는 점주 실행	4,400	146	– 중도금 (30%) : 상호 협의 – 잔금 (20%)	간판(전면 5m*1m/ 돌출 3m*1m), 신규제작기준
집기	가맹본부 또는 점주 실행	14,850	495	:공사 완료 5 일전	계약취소 및 입고 일주일전 반환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계경원	1,500	50	선 입금 후 발주	상품미공급시 반환
소모품 / 판촉비	가맹본부 또는 점주 실행	협의 후 산정		발주시 지급 해당업체에 지급	
POS기 설치	점주 실행	임대 또는 구입 선택		설치 1일전까지 해당업체에 지급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점포비, 철거, 전기증설, 가스공사, 냉난방시설, 인허가사항 등 기타 개설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 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승인	상권의 크기, 주변 상가의 입점형태, 주변상가의 규모, 배후 인구,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가맹점 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제한 없음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종업원	제한 없음	만 19 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우박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인테리어 공정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주방/홀 집기 집기 리스트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2. 영업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사용료		당사는 최초 납입 가맹비를 제외한 추가 상표사용료의 비용을 받지 않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 본부	직전 3개월 물류 매출액의 5%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광고 실시 전	광고 실시 후에는 소멸 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판촉 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 훈련비	가맹 본부	당사는 추가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 본부	1,500~3,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 경될 수 있으며, 교 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결정	부득이한 경우 변 경될 수 있으며, 교 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없음				
시설, 각 종 기기의 교체.보수		해당없음				

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 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1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사용료		해당없음				
지연 이자	가맹 본부	연 24%	지급기일 의 다음날로 부터 지급하 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 을 시 부담

단, 오픈3개월 미만 매장은 직전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란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상품의 보관상태 및 재고관리, 배달 및 서비스 상태, 회계 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 추가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항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을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이때 영업 know-how 전수 및 교육 등의 비용으로 최초 가맹금의 50%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원할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양수인에게 신규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을의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 양수할 경우 교육비는 면제되며, 이 때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경업금지 기간

[우박집]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우박집]본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우박집]의 영업과 동종업종으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 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 ②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전액을 완제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경영기법 또는 지적 재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공급된 상품 중에서 완전물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출고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우박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우박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특수관계인과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우박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특정한 거래상대방 지정하지 않음.					

2) 당사가 [우박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특수 관계인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삼겹살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메뉴 종류 및 판매가격을 해당 가맹점의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2 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돼지고기		
소고기		
양념소고기		
냉면 및 후식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 받는 상품명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 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		2 회 위반: 2 회이상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소갈비살1.0kg	68,000	변경시 우편공문 발송	2023.12월 기준
1.0kg 4 종 set	63,000		
1.0kg 2 종 set	63,000		
1/2set 메뉴	40,000		
1 인분 150g	16,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우박집	당사는 계열회사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함박스테이크, 돈까스를 전문으로 하는	푸릴리	

가맹사업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설정기준	설정방법
동별 행정구역당 1 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우박집’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우박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지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우박집]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우박집] 가맹사업의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

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 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계약서 6 조 2 항에 의거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전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 3 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점포소재지, 점포규모, 상호, 사업자명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본부의 승인 하에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한다.
 6.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15 조 규정(비밀유지의무)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16 조의 규정(경업금지의무)을 위반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갑”이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상품의 보관상태 및 재고관리, 배달 및 서비스 상태, 회계 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3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 및 영업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제품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한다는 가맹계약서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계약 기간 동안 누적하여 총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3 회 이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 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 위반한 경우
15.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이 인터넷 게시판, 인터뷰, TV·신문 등을 통하여 불만을 공개하도록 방치하는 등 가맹본부와 『군삼겹』 가맹점 전체에 대한 위급하고 중요한 명예실추를 초래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2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 물품과 상품 기타 장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2.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14 조 및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40 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 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제 3 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이 인정되며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가맹비 및 교육비의 50%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원칙적으로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동일 지역 내에서 [우박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동일 업종으로써 동일 메뉴구성 또는 동일 상호로 육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군상점 사업본부(1644-679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영업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월 5일 이상 휴점 금지

다만, 가맹점 지역특색, 상권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9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권장되는 종업원 수 : 주방 : 3명 / 홀 : 3명 (99㎡ 매장 기준)
-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자율 선택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및 위생상태, 조리상태, 서비스 상태,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우박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전국광고	전국규모의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와 전국의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단위광고/개별광고	-	100% 부담
판촉	판촉 활동을 위한 통일적 판플렛,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등의 디자인 비용을 부담.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을 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해당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광고 또는 선전은 [우박집] 프랜차이즈 일원으로써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것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인터넷(블로그, 카페,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를 모두 포함) 등 상기 매체에 준하는 광고(홍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는 가맹점사업자 자체 블로그, 카페 등 광고(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간판류, 모형샘플, 제품류, 패널류 등을 가맹점에서 제작 시 재질 디자인은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 ②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은 가맹본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vat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 일 내외	약 70,050,000 원 (p8~9 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점포임대비용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0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당사 : 우체국, 신한은행)	D-28(1 일)	가맹비,보증금 970 만원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 일)	총 인테리어 금액의 5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 일)	총 인테리어 금액의 30%
잔금 지급	- 공사 잔금 입금		총 인테리어 금액의 2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 사업자의 개인 사정, 인허가 사항,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보공개서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별첨의 서식에 작성하여 **[우체국이나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권을 수령 후 가맹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

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가맹점 사업자가 추구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우박집]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우박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교육	회사 소개 음식 보관 음식 가공 POS 사용 고객 접대 서비스 교육	실습교육	오픈 기간 중 5 일 간 실시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실시 점주 요청시 실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우박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교육	5 일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해당 사항 없음.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
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1) 재무상태표 21, 22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첨부2-2) 손익계산서 21,22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첨부3-1) 재무상태표 22, 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	---

첨부4-1) 손익계산서 22, 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지 제 5 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 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희망지역 : _____.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본인은 [㈜계경원]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계 경 원 (인)	수령자:	(인)
--------	--------------	------	-----

수령일 : 20 년 월 일

절 취 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본부 보관용)

본인은 [㈜계경원]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계 경 원 (인)	수령자 :	(인)
--------	--------------	-------	-----

수령일 : 20 년 월 일